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62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6287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31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망 B의 소송수계인 K

2. 망 B의 소송수계인 L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구

변론종결 2024. 5. 8.

판결선고 2024. 6. 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31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3. 20. 접수 제133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를 ‘망 B’으로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망 B이 원고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가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20. 3. 20.에 원고와 망 B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이지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망 B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 부분은 원고와 망 B의 합의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2022. 1. 29.자 회의에서 망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위 합의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 B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 1. 29.자 회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 부분을 읽어 주었으나 망 B 혹은 피고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망 B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8, 8-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29.자 회의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 부분을 읽어 주었는데 이에 대해 망 B이나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B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발판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B은 2022. 2. 6. 원고에게 찾아가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가 말한바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보겠다고 요구하였으나(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사본을 망 B에게 교부하지 않아 원고만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보여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22. 1. 29.자 회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을 읽어준데 대하여 망 B이나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망 B이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망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일단은 2022. 1. 29.자 회의 당시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망 B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발판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한 취지가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망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이 없어서 원고측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망 B의 위 발언의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주겠다는 취지일 수도 있다) 망 B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당시 망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성혜, 판사 서희경, 판사 윤정인

별지